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가합532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호

담당변호사 송영훈

변론 종결 2024. 8. 21.

판결 선고 2024. 10. 30.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2023. 3.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2023. 3. 28.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91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금액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16. 3. 31.	1,080,000,000	1,200,000,000	기업은행		890,642,634
2	2019. 3. 20.	270,000,000	300,000,000	기업은행	2023. 11. 9.	262,983,984
3	2021. 3. 26.	297,000,000	330,000,000	C은행		308,100,720
합계		1,647,000,000	1,830,000,000			1,461,727,338

나. 원고는 2023. 5. 4. 위 대출은행 중 하나인 C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B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1. 9. 위 표 기재와 같이 총 1,461,727,3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B는 2023. 3.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20,000,000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914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약 1달가량 지난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은행들에게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결국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 1,461,727,338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12,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B는 2023. 3. 28.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포천시 D 지상 강파이프구조 합성수지 판넬지붕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의 2023. 9. 27. 기준 감정평가액은 9,094,128,710원이다.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정부지방법원 E)에 제출된 권리신고 등을 통하여 확인된 B의 채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산업은행	739,286,573	2019. 9. 25. 근저당권설정계약
2	근로복지공단	200,342,730	
3	F	83,596,456	

1	한국산업은행	739,286,573	2019. 9. 25. 근저당권설정계약
4	F	134,325,250	
5	G은행	472,204,730	대출일자:2020. 7. 6. 및 2021. 4. 20.
6	원고	1,451,727,338	
7	중소기업은행	7,618,371,487	2019. 5. 24.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6,540,000,000원)
8	H은행	258,893,322	2017. 4. 13. 자 일반자금대출
9	C은행	821,562,608	2020. 3. 26. 근저당권설정계약
		11,780,310,494	

3) 따라서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기준으로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 어려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피고에 대한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B는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중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매출관리 필요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주직원이 존재하지 않고, 매년 추석과 설과 같은 명절에 B와 계속적 거래를 해왔을 뿐, B의 재정상황이나 무자력 여부를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B와 피고는 2023년 이전부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 이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증인 I가 증언한 B와 피고 사이의 거래 규모(B와 피고 사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증인 I는 추석과 설에 각각 약 7억 원 정도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23년 설 명절에 납품한 물품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 766,581,134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이미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각 채권최고액을 합산하면 약 85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이태영

판사류하나

판사박상권

별지